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01. 7. 4

나. 제출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2001. 7. 4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88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2001. 7. 12)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회계과장 양희준)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조례의 위임사항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나. 주요골자

- 공공시설 위탁시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사용료 등에 관하여 위탁계약에 포함하여 문제 발생을 사전예방(안 제5조제2항, 제4항)
- 공유재산 담당공무원이 은닉재산을 발견한 때에도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반영됨(안 제6조 제4항)
-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 이하의 재산에 대한 취득·처분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3항제2호)
- “사용허가의 제한”을 “사용·수익허가의 제한”으로, “사용허가의 기간”을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으로, “사용허가의 조건”을 “사용·수익허가의 조건”으로, “사용허가부의 비치”를 “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로 하며, “사용허가부”를 “사용·수익허가부”로 명칭변경(안 제12조 내지 제15조)
- 생활보호법 폐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용어정비(안 제22조제1항제6호)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사용요율·대부요율과 형평을 기하고 요율적용의 탄력성을 부여코자 대부료 및 사용료의 요율을 일정비율에서 일정비율 이상으로 상향조정토록 관련조항 정비(안 제23조)
- 공유재산 내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 대부료를 상업용과 주거용을 구분하여 산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2항)
- 전세금제도 도입에 따른 전세금 납부방법 등 기준을 정함(안 제25조의2)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게 대부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 대한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2항)
-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여 민원소지를 사전에 예방토록 함(안 제28조의2)
- 하천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안 제39조의2)
- 국유재산관리계획과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집단화된 토지매각시 혼란을 초래하므로 분할매각으로 관련조항 정비(안 제39조의2제5항제3호)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은닉재산신고 성과금을 공무원한테도 지급합니까?	○ 네

- 공유재산을 세금납부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 전세가 유리한지, 대부가 유리한지?
- 제7조 공유재산 심의는 어디서 하는지?

- 제25조2의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에 유리한 쪽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요즘같이 저금리 시대는 전세가 유리합니다.
-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리고 의회 심의를 받습니다.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수정의결

6. 소수의견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93호
의결년월일	2001. 7. 14 (제88회)

제출년월일 : 2001. 7. 4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조례의 위임사항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 주요골자

- 공공시설 위탁시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사용료 등에 관하여 위탁계약에 포함하여 문제 발생을 사전예방(안 제5조제2항, 제4항)
- 공유재산 담당공무원이 은닉재산을 발견한 때에도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반영됨(안 제6조제4항)
-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 이하의 재산에 대한 취득·처분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3항제2호)

- “사용허가의 제한”을 “사용·수익허가의 제한”으로, “사용허가의 기간”을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으로, “사용허가의 조건”을 “사용·수익허가의 조건”으로, “사용허가부의 비치”를 “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로 하며, “사용허가부”를 “사용·수익허가부”로 명칭변경(안 제12조 내지 제15조)
- 생활보호법폐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용어정비(안 제22조제1항제6호)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사용요율·대부요율과 형평을 기하고 요율적용의 탄력성을 부여코자 대부료 및 사용료의 요율을 일정비율에서 일정비율 이상으로 상향조정토록 관련조항 정비(안 제23조)
- 공유재산 내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 대부료를 상업용과 주거용을 구분하여 산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2항)
- 전세금제도 도입에 따른 전세금 납부방법 등 기준을 정함(안 제25조의2)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게 대부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 대한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2항)
-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여 민원소지를 사전에 예방토록 함(안 제28조의2)
- 하천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안 제39조의2)
- 국유재산관리계획과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집단화된 토지매각시 혼란을 초래하므로 분할매각으로 관련조항 정비(안 제39조의2제5항제3호)

부천시공유재산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공공시설의 위탁 관리) ①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 및 법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영 제8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영 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은닉재산을 신고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

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영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 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 사항
3.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사항
4.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2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제2항 및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 이하의 재산에 대한 취득·처분
3.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 이하의 행정재산·보존재산에 대한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제11조제1항중 "행정재산"을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 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장 제목중 "행정재산"을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 한다.

제12조중 "사용허가의 제한"을 "사용·수익허가의 제한"으로 하고, 동조 제1항 중 "행정재산"을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행정재산"을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 하고, 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3조중 "사용허가 기간"을 "사용·수익허가 기간"으로 하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로 하며, "사용허가"를 "사용·수익허가"로 한다.

제14조중 "사용허가 조건"을 "사용·수익허가 조건"으로 하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로 하며, 동조제6호 및 제7호의 "사용허가"를 각각 "사용·수익허가"로 한다.

제15조중 "사용허가부의 비치"를 "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로 하고 "사용허가부"를 "사용·수익허가부"로 한다.

제19조의3에 제4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외·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2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제6호 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하며, 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잡종 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중 "영 제92조제2항"을 "영 제92조"로 하고, "1,000분의 50"을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고, "1,000분의 25로"를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하며, 제2항중 "1,000분의 10"을 "1,000분의 10 이상"

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4항중 “1,000분의 40”을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하고, 제6항 중 “1,000분의 25로”를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하며,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하고, “1,000분의 10”을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며,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광업, 채석을 위한 대부의 경우에는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그 지상의 입목 또는 입산물가격을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⑨영 제88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 내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또는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증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유치한 공장 등에 필요한 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제23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의3중 “사용허가”를 “사용·수익허가”로 한다.

제25조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2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에 있는 상업용 사유건물 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주거용 사유건물 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대부료는 총 대지면적을 사용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으로 나눈 면적비율을 의하여 산출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영 제100조의3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건물·기타 구조물이 있는 재산에 한한다)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하고자 하는 재산의 용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사용료·대부료를 받는 것보다 시에 유리한 때
2. 인근의 민간시설과 경쟁관계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때
3. 기타 상기 각호의 기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③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전세금은 정보통신부의 1년 정기에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전세금은 영 제74조에서 정한 세입세출예산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제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제1항중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로 한다”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납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연 15%의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납부를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한 기한 내에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시장이 제23조제6항 단서 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게 대부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을 할 수 있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의2제3항중 “하천법 제25조”를 “하천법 제33조”로 하고, 제5항제3호중 “(건물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미달하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을 “(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 내의 토지 포함)”으로 하며, 후단부분 “매각”을 “분할매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	제5조(공공시설의 위탁 관리) ①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 및 법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

리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전대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영 제8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사용 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수탁자가 점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제6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③ (생략)

④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은닉재산 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영 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신고한 경우.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재산담당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은닉재산을 발견 신고한 경우

제6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③(현행과 같음)

④영 제107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은닉재산을 신고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 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생략)

제7조(시 공유재산심의회) ①(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 2. <삭제 2000. 1. 15>

3.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2항의 심의 사항 중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관리 및 처분) ①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행정재산은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토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아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를 할 경우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⑤(현행과 같음)

제7조(시공유재산심의회) ①(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 2. 영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 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 사항
- 3.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사항
- 4.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2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1.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제2항 및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 2.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 이하의 재산에 대한 취득·처분
- 3.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 이하의 행정재산·보존재산에 대한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제11조(관리 및 처분) ①..... 행정재산·보존재산.....

②<삭제>

③<삭제>

1. 일반시지역 : 일단의 면적이 600제곱미터 이하 토지(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2. 시가 1천만원 이하의 기타 재산

④(생략)

제2장 행정재산의 관리

제12조(사용허가의 제한) ①행정재산을 사용하고 자 할 때에는 사용목적에 신중히 검토 후 사용 허가 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차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서에 명백히 해두어야 한다.

②행정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생략)
2.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3. (생략)

제13조(사용허가 기간)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허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만료 1월 전에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허가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허가 조건)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가항을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 1~5. (생략)
6. 사용허가재산의 보존의무
7.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제15조(사용허가부의 비치) 법 제73조제2항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19조의3(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④(현행과 같음)

.....행정재산·보존재산.....

제12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행정재산·보존재산.....

②행정재산·보존재산.....

1. (현행과 같음)
2. <삭제>
3. (현행과 같음)

제13조(사용·수익허가 기간)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제14조(사용·수익허가 조건)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

- 1~5. (현행과 같음)
6. 사용·수익허가.....
7. 사용·수익허가.....

제15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사용·수익허가부.....

제19조의3(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 대상 등).....

1~3. (생략)

4.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내의 공유재산

5. (생략)

6.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3. (생략)

4. 시장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확실시 되어 계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각대금 또는 매각대금 잔액의 납부조건을 선납조건에서 분할납부조건으로 하거나 분할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하는 때, 이 경우 변경계약일까지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분할납부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5. (생략)

6.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②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3. (현행과 같음)

4. 외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현행과 같음)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
.....
.....
.....

1~3. (현행과 같음)

4. <삭제>

5. (현행과 같음)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②(현행과 같음)

1~2. (생략)

3.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③(생략)

④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잠중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원의 개발 또는 다목적댐의 건설에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인구의 분산을 위한 정착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3.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

4.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하는 때

5.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제2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①영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공용·공공용의 목적과 취락개선사업에 사용할 재산으로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1,000분의 25로 한다.

②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한 토지의 대부료는 당해 토지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③광업, 채석의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1~2. (현행과 같음)

3. <삭제>

③(현행과 같음)

④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잠중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①영 제92조
.....
.....1,000분의 50 이상.....
.....

1,000분의 25 이상으로.....

②.....
.....
1,000분의 10 이상.....

③광업, 채석을 위한 대부의 경우에는 당해재산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로 징수한다.

1. 광업, 채석을 위한 대부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다만,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그 지상의 입목 또는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④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으로 한다.

1~2. (생략)

⑤ (생략)

⑥ 주거용건물이 있는 재산(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5로 한다. 다만,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경우는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⑦~⑧(생략)

<신설>

제23조의2(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①(생략)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그 지상의 입목 또는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④.....
.....1,000분의 40 이상.....
.....

1~2. (현행과 같음)

⑤(현행과 같음)

⑥.....
.....1,000분의 25 이상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1,000분의 10 이상.....

⑦~⑧(현행과 같음)

⑨영 제88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내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또는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증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유치한 공장 등에 필요한 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제23조의2(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①(현행과 같음)

②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근지역의 사유재산 임대료에 비해 현저히 차이가 나서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희망자가 없어 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20 퍼센트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에 한하여 이를 가감조정 할 수 있다.

③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을 적용 받는 자인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액 조정할 수 없다.

제23조의3(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외·투법 제13조 및 영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대상은 제19조의3 각호와 같으며 감면율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3. (생략)

제25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6. (생략)

<신설>

②<삭제>

③<삭제>

제23조의3(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
.....
.....
.....
.....

1~3. (현행과 같음)

제25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6. (현행과 같음)

②2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에 있는 상업용 사유건물 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주거용 사유건물 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총 대지면적을 사용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으로 나눈 면적비율에 의하여 산출한다.

<신설>

제25조의2(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영 제100조의3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건물·기타 구조물이 있는 재산에 한한다)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하고자 하는 재산의 용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사용료·대부료를 받는 것보다 시에 유리한 때
- 2. 인근의 민간시설과 경쟁관계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때
- 3. 기타 상기 각호의 기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③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전세금은 정보통신부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전세금은 영 제74조에서 정한 세입세출예산의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26조(대부료 납기) ①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이 1년 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③<삭제 2000. 1. 15>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①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퍼센트로 한다.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2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매조건을 달리 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을 할 수 있다.

제26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①.....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납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연 15퍼센트의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납부를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한 기한 내에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시장이 제23조제6항 단서 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게 대부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을 할 수 있다.

③(생략)

<신설>

제39조의2(수의계약으로 매각범위 등) ①~②(생략)

③영 제95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는 시의 동지역은 3,300제곱미터 이하까지 금 점유자(하천법 제25조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양여 이후 계속 대부계약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에게 매각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재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위 매각면적 기준을 초과하여 매각할 수 있다.

1~3. (생략)

④(생략)

⑤영 제95조제2항제25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2. (생략)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

③(현행과 같음)

제28조의2(변상금의 사전통지 등) ①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의2(수의계약 매각 범위 등) ①~②(현행과 같음)

③.....
.....
.....하천법 제33조.....
.....
.....

1~3. (현행과 같음)

④(현행과 같음)

⑤.....
.....

1~2. (현행과 같음)

3.
.....

